

2020년도 제1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 2020. 2. 10.(월요일), 14:00
- 장 소 :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 백대용(분과위원장), 오영주, 최현용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3.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74건(안건번호 제2020-5438호~5571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0-5438호~5440호는 웹하드에서 어문저작물을 판매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5441호는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할 수 있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5442호는 밴드에서 영화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사안임. 누구나 밴드를 검색하고 게시물을 볼 수 있어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5443호~5446호는 블로그에서 해외 애니메이션을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5447호~5449호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일본 어문저작물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제공한 사안임. 해당 저작물은 최신 콘텐츠로 국내에서 번역본이 정식 판매될 가능성이 있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

려운 점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161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 주요내용: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명령을 청구한 99건(안건번호 제2020-251~256호, 258호, 260호, 267호, 270호~271호, 278호~279호, 281호~283호, 288호, 304호~308호, 316호~317호, 320호~323호, 336호, 339~356호, 360~361호, 363호~364호, 368호~378호, 382호~388호, 392호~393호, 398호~399호, 402호~409호, 414호~416호, 420호~421호, 424호, 426호, 432호~442호)
 - 회의결과: 복제·전송자 정보 제공 명령 요건을 충족하는 16개 안건은 가결하고,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82개 안건,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6개 안건은 부결함(5개 안건은 부결 사유가 중복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1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안건상정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위원님들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A, B, C 위원 : 제척 사유 없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성원영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은 안건번호 제2020-5438호~5571호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274건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 보고로 같음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5438호~5440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웹하드에서 어문저작물을 판매한 총 7개 게시물에 대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5438호~5440호는 각각 '○○○○○○○○', '■■■■■■■■', '△△△△△△△△△△△△' 저작물

에 대한 사안임. 그 중 안전번호 제2020-5438호, 5439호 게시자는 해비 업로더로 보임.

(안전번호 제2020-5438호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은 장편소설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20-5438호~5440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B 위원 : 게시자가 영리 목적으로 불법복제물을 복제·전송하고 있음.
- C 위원 : 해당 어문저작물은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으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 백대용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5438호~5440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5441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 이용자가 애니메이션 영화 ‘㉸㉸㉸㉸’의 줄거리와 전체를 볼 수 있는 영상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을 올린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의 링크를 클릭하면 미국에 서버가 위치한 커뮤니티 사이트로 연결됨. 애니메이션 영화 ‘㉸㉸㉸㉸’는 2019. 11. 21. 개봉하여 현재까지 상영 중인 영화로 2020. 2. 11. VOD 출시 예정임. 우리 심의위원회는 링크 설정 행위의 민사방조 책임을 인정한 서울

고등법원 판결이 나온 후부터는 불법복제물로의 연결을 제공하는 링크 게시물에 대해 시정권고를 하고 있음.

(링크를 클릭하여 영상을 재생하면서)심의실의 인터넷 연결 상태가 좋지 못하여 해당 영상의 재생이 느림. 심의위원회 사무처에서 확인했을 때는 정상적으로 재생이 되었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전송 중단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 B 위원 : (웃으면서)해당 영상의 재생을 기다리게 하면서 하단의 광고를 보게끔 하는 의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안전번호 제2020-5441호 조사 자료를 보여주면서)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보도록 하겠음. 캡처 화면을 보시면 해당 영상에서 한글 자막도 함께 제공하고 있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20-5441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은 방조적 성격이 있으므로 시정권고 해야 함.
- B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C 위원 :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 백대용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5441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5442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심의위원회에서 과거 여러 차례 다른 바가 있는 스포츠 관련 밴드에서 2019. 12. 24. 개봉한 뮤지컬 영화 '♣♣'를 MP4 파일 형태로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의 밴드명만으로는 불법복제물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2020. 2. 4. 기준으로 해당 밴드의 회원 수는 3,476명이며, 누구나 밴드를 검색해 찾을 수 있고, 게시물을 볼 수 있음.

우리 심의위원회는 밴드 내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가 이루어질 경우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밴드 개설 목적, 가입의 용이성 내지 폐쇄성, 회원 수의 많고 적음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 여부를 심의하고 있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20-5442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B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은 최근 개봉한 영화를 제공하고 있어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C 위원 : 해당 밴드는 영화 공유를 목적으로 개설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동일한 밴드 내에서 다수의 영화 불법복제물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있음.
- A 위원 : 해당 밴드는 누구나 게시물을 볼 수 있거나 가입만 하면 게시물을 볼 수 있으므로 시정권고의 타당성이 인정됨.

- 백대용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5442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5443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네이버 이용자가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일본 애니메이션 ‘♡♡♡’를 제공한 사안임.
(안전번호 제2020-5443호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은 ‘♡♡♡’ 22기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2기는 일본 후지 TV에서 2019. 7. 7.부터 현재까지 방영 중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20-5443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C 위원 : 저작권자의 복제권,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불법복제물에 해당한다고 생각함.
- A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은 영상저작물을 무단 제공하고 있음.
- B 위원 : 일본 저작물도 우리나라 저작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봄.
- 백대용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5443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5444호~5446호는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일본 애니메이

선 불법복제물에 대한 사안임. 2019년 민원 건의 후속조치로 48개 게시물에 대해 심의를 요청함.

(해당 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5444호~5446호 심의 대상 게시물에서 각각 '♡♡♡', '◇◇◇◇', '●●●●●'을 제공하고 있음. '♡♡♡', '●●●●●'은 최신 저작물은 아니나 민원인이 신고 하였기 때문에 보호원이 후속조치로 모니터링한 것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20-5444호~5446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C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A 위원 :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시정권고 필요성이 인정됨.
- B 위원 : 같은 생각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5444호~5446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5447호~5449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총 3개 안건, 30개 게시물에 대한 사안임. 30개 게시물은 각각 서로 다른 챕터를 제공하고 있음. 커뮤니티 사이트 이용자들이 국내에 정식 출간되지 않은 일본 출판물 '☒☒☒☒☒☒' 11권의 번역본을 게시함.

(안전번호 제2020-5447호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은 2019. 8. 12.에 업로드되었음. 참고로 '㉸㉸㉸㉸㉸㉸'은 일본 GA문고에서 2015. 9. 25.부터 2019. 8. 9.까지 총 11권 발매되었고, 우리나라 노블엔진에서 2017. 5. 18.부터 2019. 11. 27.까지 총 10권 발매되었음. 심의대상 게시물의 전자책을 아마존에서 약 ₩594에 판매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제목에 '번역'이라고 적혀 있으며, 심의대상 게시물에서의 표현에 비추어 볼 때 여러 명이 협업하여 번역하는 것으로 보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20-5447호~5449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C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제공하는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 게시자들은 한 게시물당 해당 어문저작물의 한화(챕터) 전체 분량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안전번호 제2020-5447호~5449호에서 제공하는 분량은 약 한 권 분량임.
- B 위원 : 게시자들이 직접 우리말로 번역하였을 가능성이 커 2차적 저작물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해당 저작물의 11권의 번역본이 국내에서 판매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결 의견임.
- C 위원 : 만화에서 자막만 번역한 경우와는 다르게 소설 그 자체를 번역한 것이므로 합법 시장의 대체 효과가 커 보임. 가결 의견에 동의함.

- A 위원 : 마찬가지로 가결 의견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5447호~5449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5450호~5571호는 웹하드 등 사이트를 통해서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임.
(영화 ‘해치지않아’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5484호는 2020. 1. 15. 개봉한 영화를 모바일 웹하드에서 23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2020. 2. 10. 기준으로 상영 중임. 해당 영화는 2020. 2. 4. VOD 서비스를 시작하였음. 보호원의 채증 일자도 2020. 2. 4.임.
(영화 ‘백두산’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5506호는 2019. 12. 19. 개봉한 영화를 모바일 웹하드에서 25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2020. 2. 10. 기준으로 상영 중임. 해당 영화는 2020. 1. 22. VOD 서비스를 시작하였음.
(방송 ‘공정 드래곤즈’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5532호는 웹하드에서 ‘공정 드래곤즈 2화’를 5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상물은 일본 후지TV 채널에서 2020. 1. 8.부터 방영 중인 TV 만화임. 심의대상 게시물의 영상 속에는 SMI 한글 자막 파일이 포함되어 있음. 해당 방송은 원작이 만화임.
(만화 ‘슬라임을 잡으면서 300년, 모르는 사이에 레벨MAX가 되었습니다 (출판 : 영상출판미디어)’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5566호는 웹하드에서 ‘슬라임을 잡으면서 300년, 모르는 사이에

레벨MAX가 되었습니다 1~2화' 압축 파일을 2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어문저작물은 일본에서 2017. 1. 13.부터 발매 중이며 총 10권으로 미완결임. 해당 어문저작물은 우리나라에서 2018. 1. 24. 발매 중이며 총 8권으로 미완결임. 합법저작물 단권 판매가는 약 9,000 원임. 해당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jpg 파일로 이용 가능함. 해당 어문저작물의 말풍선 부분은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20-5450호~5571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C 위원 : 데드카피 불법 전송 사안임.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
- A 위원 : 모두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다만 이미 삭제되었거나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해야 함.
- B 위원 : 해당 안건들은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의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5450호~5571호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조치 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5438호~5571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은 13면부터 26면까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251~256호, 258호, 260호, 267호, 270호~271호, 278호~279호, 281호~283호, 288호, 304호~308호, 316호~317호, 320호~323호, 336호, 339~356호, 360~361호, 363호~364호, 368호~378호, 382호~388호, 392호~393호, 398호~399호, 402호~409호, 414호~416호, 420호~421호, 424호, 426호, 432호~442호의 복제·전송자 정보 제공 명령 요건을 충족하는 16개 계정에 대하여는 가결하되,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82개 안전,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6개(부결사유 중복 5건)는 부결함.”

3. 폐회 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이 제1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1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2. 14.

분과위원장 백대용

위원 오영주

위원 최현용